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우리청 관내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,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우리청에서 직권 제거함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6일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1. (공고 기간) 2026. 9. 16. ~ 9. 30.(14일간)

2. (제거 대상) 붙임 참조

3. (소유자·점유자 및 이해관계인* 유의사항)

*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에 따라 선박원부(船舶原簿)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

가. 공고 기간 내 해당 선박 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,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공유수면 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상기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(기타) 이의신청 또는 기타문의는 해양수산환경과(☎051-609-652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

발견장소	부산 강서구 송정동 1755번지 인근해상(강서구 해양수산물 어업지도선 선척장 인근)			
선박제원	선명(소유자)	미상	선박번호	-
	선 적 항	-	톤수	1톤 미만(추정)
	주요치수	목재 뗏목(어구)		
관리청		부산지방해양수산청	관리번호	제2026 - 01호
제거 예정일자		2026년 9월 30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		
제거방법		직권 제거(폐기 처리)		
공매장소 및 일시		-		
입찰보증금	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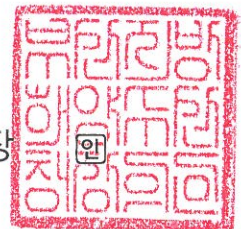
전경사진



위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권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이의신청 또는 기타문의는 **2026년 9월 30일까지**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☎ 051-609-652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6일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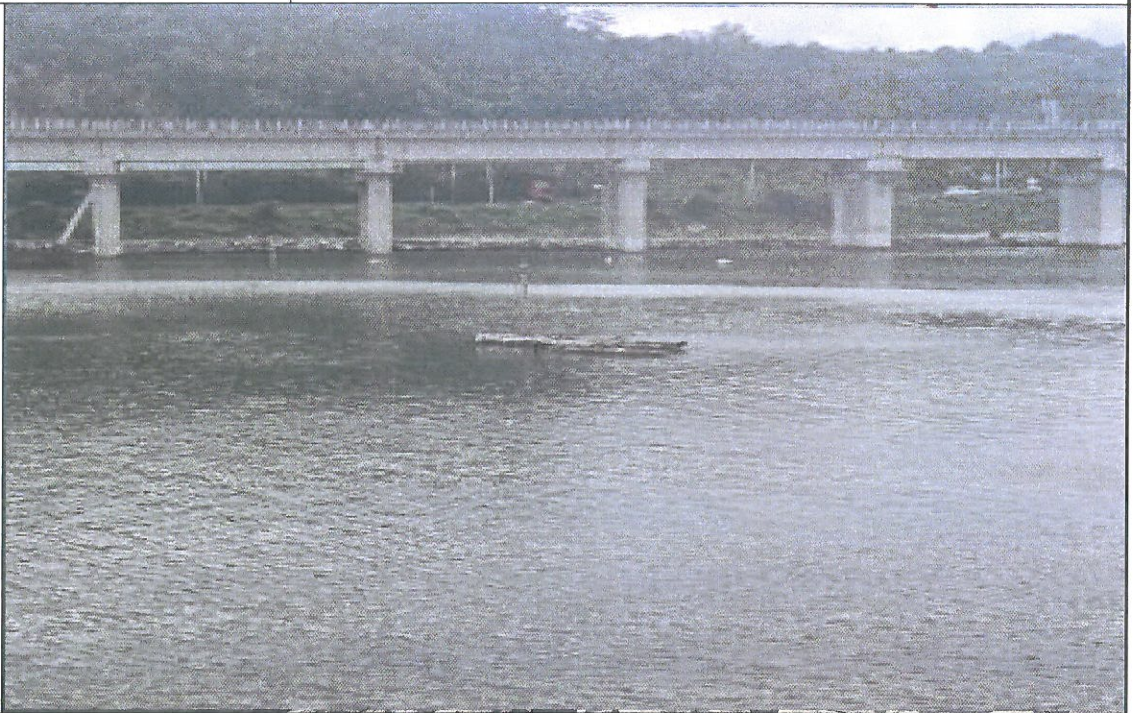


(담당자: 남상균 주무관, 전화번호: 051-609-6526)
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

발견장소	부산 강서구 송정동 1755번지 인근해상(강서구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선척장 인근)			
선박제원	선명(소유자)	미상	선박번호	-
	선 적 항	-	톤수	1톤 미만(추정)
	주요치수	FRP 바지선		
관리청		부산지방해양수산청	관리번호	제2026-02호
제거 예정일자		2026년 9월 30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		
제거방법		직권 제거(폐기 처리)		
공매장소 및 일시		-		
입찰보증금	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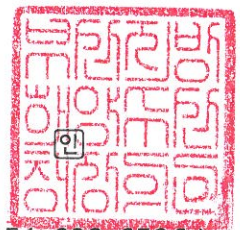
전경사진



위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권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이의신청 또는 기타문의는 **2026년 9월 30일까지**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☎ 051-609-652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6일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

(담당자: 남상균 주무관, 전화번호: 051-609-6526)